

제429회 국회
(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제 10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10월21일(화)

장 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
-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추가)
-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추가)

상정된 안건

1.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	1
o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추미애 위원 외 10인 서면동의)	4
2.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	4
o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곽규택 위원 외 6인 서면동의)	7
3.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	7

(11시59분 개의)

○위원장 추미애 의사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

○위원장 추미애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오늘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 여경은·오창훈·강란주에 대하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오늘 국정감사 종료 전까지 국정감사장으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나경원 위원님.

○나경원 위원 지금 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고 하는 판사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제주법원에서 제주간첩단 사건과 관련된 제주간첩단 사건의 피고인을 호송하는 것을 방해한 사건에 대해서 형의 선고를 한 오창훈 판사를 공격하기 위한 그런 의도로 시작되었다

고 봅니다.

아까 신동욱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인택 부장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결국 이 사건은 사실 이렇게 재판부를 공격하는 식으로 해서 온갖 공안사건을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해서 이러한 증인 신청을 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오 부장의 경우에는 이미 형사고발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형사고발된 사건에 있어서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수사의 소추에 관여할 수 있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오늘 제주법원의 국정감사는 오전으로 종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으로 종료하기로 된 제주법원 국정감사만 불필요하게 오후로 늘린다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이유로……

지금 전체적인 틀은 민주당에 의한 또한 정부 여권 세력에 의한 사법 장악의 의도로 봅니다. 실질적으로 집요하게 판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지귀연’하면서 공격하고 있는데요. 판사를 공격하는 것, 결국 민주당이 원하는 또는 여권이 원하는 재판을 찍어 내라는 것 아닌가, 특히 이 사건은 간첩단 사건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함부로 증인 소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행명령을 발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합니다.

○위원장 추미애 박지원 위원님.

○박지원 위원 제주지원 문제는 여러 위원들이 다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제주지원은 재판을 지연시키면서 재판장들이 노래방 가기, 아기 보러 가고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재판질서를 완전히 파괴하고 있는 게 제주지방법원이에요.

그리고 간첩 사건을 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증인으로 나올 수 없다? 그것은 위원들이 절제해서 질문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물론 나경원 위원께서 지적한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사법질서, 사법기강을 무너뜨리고 있는 제주지법 세 판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동행명령을 발부해서 오늘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것이 국회가 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꼭 발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욱 위원 저도 짧게 한말씀, 제가 문제 제기했기 때문에 짧게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곽규택 위원 의견 있습니다.

○김기표 위원 토론 종결 동의합니다.

○박은정 위원 저도 하겠습니다.

○이성윤 위원 토론 종결해 주십시오.

○김기표 위원 더 토론할 필요가 없는 사안입니다, 이것은.

○곽규택 위원 좀 더 합시다.

(장내 소란)

○김기표 위원 토론 종결 동의합니다. 토론할 필요 없는 사안입니다.

○위원장 추미애 김기표 위원님께서 토론 종결 동의를 하셨습니다.

토론 종결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들 손을 들어 주십시오. 토론 종결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지요.

(거수 표결)

반대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김용민 위원님 등 찬성하는 위원님들이 계시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토론 종결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고 이에 대하여 국회법 제108조에 따라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표결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7인 중 찬성 10인, 반대 6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 종결 동의가 가결되었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반대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7인 중 찬성 10인, 반대 6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행명령장의 집행에 관한 세부 절차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 수령을 회피한 때,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동행명령장을 집행하는 국회 직원은 차질 없이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정회하고 다시 국정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8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추미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법제사법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추미애 위원 외 10인 서면동의)

○위원장 추미애 추미애 위원, 위원장인 제가 2025년도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증인들과 동행명령을 거부한 증인들을 고발하는 내용의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심사할 것을 요구하는 동의를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서면동의서에 추미애 위원 외 열 분의 위원님의 찬성이 있으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의사일정 변경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한 국회법 제77조에 따르면 의사일정 변경동의에 대해서는 토론 없이 표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을 의사일정 제2항으로 추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에 대하여 국회법에 따라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변경에……

○곽규택 위원 위원장님, 토론을 좀 하시지요. 고발하는 건데 어떻게…… 토론 안 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토론을 하지 말란 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용민 위원 아니, 상정 절차잖아, 상정. 상정을 해야 토론을 하지요.

○위원장 추미애 좀 들어 보세요. 아까 국회법 71조에 따라서 이것은 토론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안 들으셔요.

○곽규택 위원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추미애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에 대하여 국회법에 따라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변경에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7인 중 찬성 10인, 반대 6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

(18시)51분

○위원장 추미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적법한 출석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들과 동행명령을 거부한 증인들을 고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송석준 위원님.

2분만 쓰시지요.

○송석준 위원 국정감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우리가 증인을 부르고 참고인도 부르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어기게 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제재도 가할 필요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이번에 고발하게 된 분들 한 분 한 분을 보면 이게 다 지금…… 보세요. 한덕수, 심우정, 김주현, 지귀연, 김상민, 안부수, 김진태, 윤현숙, 오창훈, 강란주. 지금 동행명령 거부된 두 분도 역시 오창훈, 강란주잖아요. 그런데 보면 이분들이 다 관련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을 받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특히 오늘 오창훈, 강란주, 이분도 현직 판사로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증인 대상이 됐겠지만 아마 나름대로 사유가 있어서 오늘 못 나왔는데 이것을 갖고 고발을 해서 괴롭힌다는 것은…… 법사위에서 한정된 시간에, 우리가 더 중요한 안건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조금 이따 처리해야 할 민중기 특별검사를 증인으로 채택하자, 이렇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귀한 시간을 할애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이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고발을 하고 또 추가로 수사 의뢰하고 이러지 않아도 어차피 이미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이 고발하고 그래서 수사도 받고 또 관계 기관의 감찰도 받고 하는 증인네 우리가 그렇게 할 일이 없어서 자꾸 이종 삼중으로 이분들을 부르고 또 동행명령 하러 제주도까지 보내고…… 이게 지금 국민들이 보기에 왜 이렇게, 법사위는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산적한 밀린 일에 집중하고 이렇게 계속 반복적이고 중복적인 일에 소모하는 그러한 일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법사위 할 일 좀 합시다.

○곽규택 위원 의견 있습니다.

○나경원 위원 의견 있습니다. 저희 한 명만 더 주세요.

○김용민 위원 토론하겠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김용민 위원님.

○김용민 위원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서 증인으로 불출석하면 처벌해야지요. 고발해서 처벌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원에서 재판을 해도 증인이 불출석하면 과태료, 그래도 불출석하면 구금하지 않습니까.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것은 왜 그렇겠습니까?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야 되는 법원의 권위를 그리고 법원 재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가 지금 국민을 대신해서 중요한 국정감사를 하고 정부와 그리고 법원의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필요하면 증인으로 불러야지요. 그러면 오늘 기관증인들 다 왜 나왔습니까? 이분들도 우리가 증인으로 부르

니까 나오는 거예요. 다 선서하고 하지 않습니까. 누구는 나오고 누구는 안 나온다? 이것은 말이 안 되지요. 안 나온 증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회법에 따라서 명확하게 제재를 해야, 그래야 국회의 권위도 서고 그리고 국정감사도 원활하게 진행된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 국감은 잘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 있었던 내란을 청산하고 극복하는 과정 그리고 윤석열 정권 동안에 있었던 수많은 잘못된 것들을 이제 확인하고 검증해서 이번에 정리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가자는 그런 국정감사입니다. 그럴수록 이번에 더더욱 증인들이 나와야지요. 안 나온 증인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제재를 해야 됩니다.

특히 한덕수 증인에 대해서만 일단 예를 들어 볼까요? 한덕수 증인은 자기가 10월 13일 날 10시부터 법원에 재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판 오전에 끝났어요. 그러면 오후에 여기 나와야지요. 오후에 저희가 증인 불렀는데 안 나옵니다. 이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국회를 무시하는 행태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고발해서 처벌받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나경원 위원 저희 30초만 주세요. 1분, 한 명만 더 주세요.

○박규택 위원 토론 종결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송석준 위원 한 분만 더 주시지요.

○곽규택 위원 한 명만 더 합시다.

○나경원 위원 김주현 수석은 상중이었어요. 상중이라고 불출석사유서 냈는데……

○김용민 위원 상 끝났어요, 한번 보십시오. 상 끝났어.

○나경원 위원 10월 13일에 부른 것 가지고 했잖아요, 10월 13일.

○김용민 위원 상중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장내 소란)

○곽규택 위원 위원장님, 토론을 좀 더 하시지요.

○위원장 추미애 박규택 위원님께서 토론을 종결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해당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은정 위원님 등 찬성하는 위원님들이 계시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토론 종결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고 이에 대하여는 국회법 제108조에 따라 토론을 하지 않고 국회법에 따라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7인 중 찬성 10인, 반대 6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 종결 동의가 가결되었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7인 중 찬성 10인, 반대 6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민 위원** 위원장님, 국민들이 모르실 수 있으니 고발하는 증인 한번 불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내 소란)

○**위원장 추미애**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증인 한덕수, 증인 심우정, 증인 김주현, 증인 지귀연, 증인 김상민, 증인 안부수, 증인 김진태, 증인 윤현숙, 증인 오창훈, 증인 강란주 등입니다.

동행명령 거부한 2인에 대한 고발은 증인 오창훈, 증인 강란주, 2인입니다.

고발장 등의 작성 등 후속 절차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곽규택 위원 외 6인 서면동의)

(19시00분)

○**위원장 추미애** 곽규택 위원님께서 민중기 특별검사를 10월 30일 종합감사에 출석 요구하는 내용의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심사할 것을 요구하는 동의를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서면동의서에 곽규택 위원님 외에 여섯 분 위원님의 찬성이 있으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의사일정 변경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국회법 제77조에 따르면 의사일정 변경동의에 대해서는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사일정 제3항으로 추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에 대하여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

(19시01분)

○**위원장 추미애**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

다.

이 안건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2025년도 국정감사 중 10월 30일 종합감사에 민중기 특별검사를 증인으로 추가하여 출석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박균택 위원** 토론 신청합니다.

○**위원장 추미애** 그러면 박균택 위원님께서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박균택 위원** 민중기 특검을 증인으로 소환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좀 전에 부산고검장에게도 했던 말입니다. 구속이 된 윤석열 피고인도 내란범이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분들이 혐의도 입증되지 않고 일부 언론의 막연한 의혹 제기를 토대로 특검 수사 중인 위치에 있는 분을 증인으로 부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참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나갈 것도 없이 어떤 의혹 자체가 불분명한 것을 가지고 특정 언론을 토대로 아무나 이렇게 증인으로 부르겠다는 태도가 옳지가 않고.

또 보니까 금감원장 발표에 의하면 민중기 특검 주식 5억은 공소시효 자체도 완료해서 재조사조차 어렵다라는 발언을 한 것이 또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증인으로 불러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곽규택 위원** 토론하겠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곽규택 위원님.

○**곽규택 위원** 민중기 특검에 대해서는 국정감사가 시작되면서 국민의힘에서는 양평 공무원 사망사건 때문에 불러야 될 증인이라고 신청을 했었는데 민주당 측에서 반대해 가지고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특검의 수사를 누가 과연 견제하고 감독할 수 있는지 아무도 답을 못 하고 있습니다.

특검에서 수사를 받다가 공무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안인데 이 사안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 민중기 특별검사를 국회에서 부르지 않고 누가 불러서 확인을 한단 말입니까? 자체 확인을 한다고 해 놓고도 아무런 답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국정감사 기간 중에 민중기 특별검사가 수사 중이라고 하는 네오세미테크 미공개정보 이용 건에 대해서 민중기 특별검사 본인이 관련돼 있다는 아주 구체적인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오늘 국감에서도 지적했듯이 본인이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있으면서 친분이 있는 네오세미테크 대표한테 미공개 주식 1만 주를 500만 원에 사 가지고 2년 만에 1억 5000만 원으로 시세차익을 얻은 그리고 그 직후에 상장폐지가 되면서 관련 공범들이 처벌을 받았는데 민중기 특별검사만 이익을 챙겨서 빠져나간 그런 사안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공범들이 수사를 받고 재판이 진행됐던 기간 동안에는 당연히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직 법관으로 있으면서 그 재판에 어떤 관여를 했는지도 확인을 해 봐야 되는 사안입니다. 이런 사유 때문에 민중기 특검에 대해서는 종합감사에서라도 불러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책임질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김기표 위원 토론 종결해 주십시오.

○ 위원장 추미애 김기표 위원님께서 토론을 종결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해당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토론 종결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고 이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108조에 따라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표결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종결 동의 찬성입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토론 종결입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 재석위원 총 18인 중 찬성 10인, 반대 7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 종결 동의가 가결되었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은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8인 중 찬성 7인, 반대 10인, 기권 1인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다시 국정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8분 산회)

○ 출석 위원(18인)

곽규택 김기표 김용민 나경원 박균택 박은정 박준태 박지원 서영교 송석준
신동욱 이성윤 장경태 전현희 조배숙 주진우 최혁진 추미애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전문위원 박병섭

전문위원 박혜진

전문위원 이은정